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

사업체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이 사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사업 유형에 맞는 필수 허가증, 계정 및/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주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사업체로서 책임을 이해하도록 지원.
- 사업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를 관장하는 주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이러한 조사는 2003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허가법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 제8.6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법 (세입 및 세무법 제2부 13편), 캘리포니아 담배 화재 안전 및 소방관 보호법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2부 8편), STAKE (어린이 담배 접근 금지 시행법)(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법 제 8.5부)에 의해 승인됩니다.

조사 대상

CDTFA 직원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를 위해 CDTFA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 및 기타 필수 사업 허가증, 계정 또는 면허 보유 여부.
 - 주법에 따르면 소매 면허 목적상 담배 제품에는 전자 흡연 담배 또는 베이핑 기기 또는 담배 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가 함께 판매되거나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CDTFA 담배 및 토바코 소매상 면허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 소매업체는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물품세 (CECET) 허가증(계좌)을 보유해야 하며, 니코틴이 포함되거나 니코틴과 함께 판매되는 전자담배의 소매 판매 가격의 12.5% 비율에 해당하는 CECET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물품세(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페이지(www.cdtfa.ca.gov/taxes-and-fees/california-electronic-cigarette-excise-tax/)에서 확인하세요.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는 각 지점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CDTFA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를 보유한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에서 캘리포니아주 세금 스탬프가 부착된 담배 및 세금이 납부된 담배 제품을 구매했는지 여부. **소매업체 간 판매는 금지됩니다.** 웹사이트(www.cdtfa.ca.gov/taxes-and-fees/cigarette-licensees.htm)에서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재고와 관련한 완전하고 판독 가능한 구매 송장이 있는지 여부.

- 면허가 발급된 각 지점에서 구매일로부터 1년 이상 구매 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송장에 대한 모든 최신 요구 사항을 숙지하려면 CDTFA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 담배 재고품:
 - 유효한 캘리포니아 세금 스탬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의 캘리포니아 토바코 디렉토리 (Tobacco Directory, www.oag.ca.gov/tobacco/directory) 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롤링토바코(RYO)도 토바코 디렉토리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의 '저발화성' 화재 안전 요건을 준수합니다.
- 재고의 토바코 제품은 세금이 납부된 제품입니다.
-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또는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지 않습니다.
- 재고품으로 보유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은 utl.doj.ca.gov의 무가향 담배 목록(UTL)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대마초, 대마초 제품 또는 대마초 추정 제품(예: 젤리 등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거나 함유한 것으로 보이는 품목, 또는 크림, 가루, 결정체 등 기타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는 각 금전등록기 및 기타 판매 지점에 STAKE 법률 사인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절차

CDTFA 직원은 귀하의 사업장에 들어가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CDTFA)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사유를 설명합니다. 직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 개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필수 허가증 및 면허 제공합니다.
- 조사를 수행하고 담배, 토바코 제품 및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를 보관하는 모든 구역(잠긴 구역 또는 캐비닛 포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의 모든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및 판매 송장을 제공합니다. 이 송장은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및 판매 송장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은 귀하의 사업장 및 해당 제품이 보관될 수 있는 기타 건물이나 보관용 컨테이너 등의 장소에서 담배, 토바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저희 직원은 사업장 내 담배에 부착된 세금 스탬프를 전자적으로 스캔하고, 구매 및 판매 송장을 검토한 후 재고와 맞춰보고, 필요에 따라 사업장 및 제품 재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또한 [publication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한국어 버전 지원: 간행물 78-K, 캘리포니아주 담배 및 토바코 제품 판매) 사본도 제공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판매 불가한 가향 담배, 가향 토바코 제품,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 대마초, 대마초 제품 및 대마초 추정 제품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사업장에서 무가향 담배 및 토바코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TL을 사용합니다.

CDTFA 직원이 법적으로 판매 불가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직원은 세금 미납, 위조, 가향 또는 기타 불법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 토바코 제품 가향 강화제가 발견되면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및 토바코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서 발견된 대마초, 대마초 제품, 대마초 추정 제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공지인 [L-1005, Cigarette and Tobacco Businesses: Cannabis and Synthetic Cannabinoid Products Subject to Seizure and Penalties, and our Tax Guide for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담배 및 타바코 사업체: 압류 및 벌금 대상인 대마초 및 합성 카나비노이드 제품, 담배 및 타바코 제품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압류하게 될 경우:

- 압류 사유를 설명합니다.
- 압류된 제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토바코 디렉토리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담배 또는 RYO 토바코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UTL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된 패키지 1건당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매상과 도매상은 CDTFA 인가 유통업체로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담배, RYO 토바코 및 토바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항상 담배 디렉토리(www.oag.ca.gov/tobacco/directory) 및 UTL(utl.doj.ca.gov)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담배 또는 RYO 토바코가 토바코 디렉토리에서 제거되는 경우, 소매상은 제거 발효일 이후 60일 동안 세금 스탬프가 찍힌 담배 또는 RYO 토바코를 보유, 운반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제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는 압수된 제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 중에 제품을 압류하는 경우, 제품 목록이 기재되고,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CDTFA-1238-IB2, *Verified Petition for Release or Recovery of Property*(자산의 압류 해제 또는 회복을 위한 확인된 청원서)가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주법에 따라 압류된 제품은 불법 또는 실수로 압류한 경우에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제품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교부 송달을 받은 날 또는 CDTFA-1238-IB, *Notice of Seizure and Forfeiture*(압류 및 몰수 통지서) 우편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www.cdtfa.ca.gov/legal/seizurecigtoboprod.htm)의 *Notice of Seizure and Forfeiture*(압류 및 몰수 통지서)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해당 압류가 불법 또는 실수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립니다(세입 및 세무법 제30438절). 확인된 청원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자산이 추가 통지나 심의 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몰수됩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환장을 받은 경우, CDTFA-408, *Notice of Violation*(위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소환 대상인 구체적인 위반 사항, 민사 처벌 또는 결과, 귀하의 이의제기 권리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CDTFA가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 소환장에 명시된 대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형사 소송에 관한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외에도 귀하의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61](#), *Criminal Citations Include a Civil Administrative Process* (형사 소환장에 민사 행정 절차 포함)을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서 형사 소환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CDTFA-408, *Notice of Violation*(위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통지서에는 소환 대상 위반 사항, 민사 처벌, 이의제기 권리 및 기타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이나 면허 취소 후에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면허가 유효하지 않으며, 면허 정지 기간이나 면허 취소 후에는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또는 선물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보유하고 있는 모든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압류 및 몰수로 이어집니다.

CDTFA-459, *Notice of Suspension*(정지 통지서) 또는 CDTFA-458, *Notice of Revocation*(취소 통지서) 게시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영업 정지 또는 취소된 사업장 내 각 공용 출입구, 계산대, 기타 모든 판매 지점에 해당 게시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 각 위반 건당 \$1,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 *Notice of Suspension*(정지 통지서) 또는 *Notice of Revocation*(취소 통지서) 게시문을 요구된 대로 게시하지 않음.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게시문 변경.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게시문을 필수 게시 기간이 지나기 전 제거함.
- 면허 정지 기간 또는 면허 취소 이후 담배 또는 토바코 제품을 판매용으로 진열함.

저에게 이 조사와 관련된 권리가 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publication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간행물 70-K,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이해)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는 다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 정중하고 신속한 서비스,
- 공정한 대우,
- 기밀 유지,
- 정보 및 지원,
- 평가에 대한 상고권.

조사 또는 조사관의 행동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직원이 비전문적 태도를 보이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Inspections Sect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916-324-0105로 전화하여 옵션 3 선택
- www.cdtfa.ca.gov/report-violation.htm에서 신고서 접수
- 우편 신고: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Inspections Section, MIC:42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2

우려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Inspections Section 감독관 또는 관리자는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귀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감독자 또는 관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Inspections Section 외부에서 신고서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CDTFA 납세자 권한 변호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사무실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정상적인 경로(예: 감독관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간행물 70](#) 을 참조하거나 납세자 권한 변호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www.cdtfa.ca.gov/tra/).

- 전화: 1-888-324-2798
- 이메일: taxpayer.rights@cdtfa.ca.gov
- 우편 신고: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 MIC:70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자세한 내용

조사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Inspections Section(1-916-324-0105)에 연락하여 옵션 3을 선택하세요.

담배 및 토바코 제품 등록, 면허, 세금 및 사업체의 책임에 관한 정보는 *Tax Guide for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가이드, www.cdtfa.ca.gov/taxes-and-fees/cigarette-and-tobacco-products/) 또는 *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물품세, www.cdtfa.ca.gov/taxes-and-fees/california-electronic-cigarette-excise-tax/)를 참조하세요.

등록 관련 질문 또는 일반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로 전화하여 *Special Taxes and Fees*(특수 세금 및 수수료) 옵션을 선택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제외).

강의, 온라인 세미나, 교육 이벤트

CDTFA는 담배 및 토바코 제품에 관한 무료 강좌, 온라인 세미나, 교육 이벤트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리소스는 면허 요건, 최근의 법규 변경, 검사 절차, 기록 유지, 벌금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향후 이벤트를 확인하려면 *Tax Education Events* 웹페이지(www.cdtfa.ca.gov/seminar/#cig)를 방문하거나 1-916-324-0105로 전화하여 옵션 3을 선택하고 등록 또는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세요.

간행물

담배 및 토바코 관련 다음 간행물은 www.cdtfa.ca.gov/formspubs/all-forms-and-publications.htm에서 제공됩니다. 간행물 중 일부는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위의 번호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63 *Cigarette Distributor Licensing and Tax Stamp Guide*
(담배 유통업체 면허 및 세금 스탬프 안내)
- 70 *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이해)
- 78 *Sales of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in California—License Requirements for Retailers*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 - 소매상에 대한 허가 규정)
- 93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Taxes*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 152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 Inspections*
(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
- 161 *Criminal Citations Include a Civil Administrative Process*
(민사 행정 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상의 소환)
- 403 *California's Counterfeit-Resistant Cigarette Tax Stamp*
(캘리포니아 위조 방지 담배 세금 스탬프)
- 407 *Master Settlement Agreement* (보상 합의)
- 429 *Flavored Cigarettes Bann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가향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473 *Things Retailers Should Know Before Buying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 (소매업체가 담배 및 토바코 제품 구매 전 숙지해야 할 내용)

관련 자료들

- *What to Know About Your 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Inspection*(담배 및 토바코 제품 조사 관련 정보) 동영상(www.youtube.com/watch?v=2k6Dgtdxo8Q)
- *Tax Guide for Cigarettes and Tobacco Products*(담배 및 토바코 제품 세금 가이드, www.cdtfa.ca.gov/taxes-and-fees/cigarette-and-tobacco-products/)
- *Tax Guide for California Electronic Cigarette Excise Tax* (캘리포니아주 전자담배 물품세 세금 가이드, www.cdtfa.ca.gov/taxes-and-fees/california-electronic-cigarette-excise-tax/)
- 세금 교육 이벤트(www.cdtfa.ca.gov/seminar/#cig)
- 법무장관실 캘리포니아주 토바코 디렉토리 (www.oag.ca.gov/tobacco/directory)

법을 위반하면 우리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1-888-334-3300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www.cdtfa.ca.gov/report-violation.htm)를 방문하세요.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는 혐의자 및 사업체 이름, 소재지 주소,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 위반 발생 기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